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63
----------	-------

발의연월일 : 2026. 7. 24.

발 의 자 : 이강일 · 김문수 · 백혜련
민병덕 · 김남희 · 박홍배
이훈기 · 김남근 · 황운하
정진욱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플랫폼 산업의 확산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형식상 위
· 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
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성 분쟁의 경우에 노무제공자가 전적으로 입증책임을
부담하여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고, 플랫폼 노동의 경우 알고리즘을
통한 통제가 이루어져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구조임.

이에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명시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제공자는 민사상 권리 · 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
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를 포함한 행정상 분쟁해결에서 근로자로 추정

하도록 하되, 근로자 추정의 효과는 형사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며, 관계 법령의 정비를 이 법 시행 전에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노무제공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계약의 종류 또는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명시하고, “사업이나 사업장”이라는 표현을 “사업”으로 수정함(안 제2조제1항제1호).
- 나.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제공자는 민사상 권리·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를 포함한 행정상 분쟁해결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되, 노무수령자가 ① 지휘·감독 부존재, ② 통상적 사업 범위 외 업무, ③ 독립사업자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한 경우에만 추정이 번복되도록 함(안 제2조의2제1항·제2항 신설).
- 다. 근로자 추정의 효과는 이 법의 적용에 따른 형사절차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을 명시함(안 제2조의2제3항 신설).
- 라. 이 법 시행 당시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 처리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분쟁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제기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함(부칙 제2조 개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을 “종류나 계약의 종류 또는 형식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노무제공자의 근로자 추정) 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은 민사상 권리·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를 포함한 행정상 분쟁해결에서 근로자로 추정한다.

②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수령하는 자(이하 “노무수령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입증한 경우에는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1. 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계약 및 실제 업무수행에서 노무수령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2. 노무제공자의 업무가 노무수령자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
3. 노무제공자가 노무수령자가 영위하는 사업과 동종 분야에서 본인

의 이름과 계산으로 독립적으로 형성된 거래, 일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추정에 관한 법적 효과는 이 법의 적용에 따른 형사절차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 추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근로자 추정과 관련하여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 처리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분쟁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 제기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u>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u> 을 말한다. 2. ~ 9. (생략) ②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① ----- -----. 1. “근로자”란 <u>직업의 종류나 계약의 종류 또는 형식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u> ----- -----. 2.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제2조의2(노무제공자의 근로자 추정)</u> ① <u>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은 민사상 권리·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를 포함한 행정상 분쟁해결에서 근로자로 추정한다.</u> ② <u>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수령하는 자(이하 “노무수령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입증한 경우에는 노무</u>

제공자를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1. 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계약 및 실제 업무수행에서 노무수령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2. 노무제공자의 업무가 노무수령자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

3. 노무제공자가 노무수령자가 영위하는 사업과 동종 분야에 서 본인의 이름과 계산으로 독립적으로 형성된 거래, 일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추정에 관한 법적 효과는 이 법의 적용에 따른 형사절차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